

제 호

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

기관의 명칭:

소재지:

대표자:

시험의 분야:

「약사법」 제34조의2제1항·제34조의3제1항, 「의료기기법」 제10조제3항·제10조의2제1항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